|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

**【문제 1】(20점)**

다음은 거주자 갑(72세, 남성)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1>을 이용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

|  |
| --- |
| **< 자료 1 >**    1. 일시적인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800,000원  2.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000,000원  3.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 2,5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시가 7,000원)  4.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1,400,000원  6.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분배금: 10,000,000원  7.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B로부터 수동적동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3,000,000원 |

**(물음 2)** 갑의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자료 2 >**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250,000원  2. 복권당첨금(1매당 5,000원인 복권 10매를 구입하여 이 중 1매가 당첨됨): 10,000,000원  3. 지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7,000,000원  4.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3,000,000원  5. 일시적으로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원  6. 국민연금 수령액: 12,000,000원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480,000,000원(납입월수 174개월)이고,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은 800,000,000원(납입월수 348개월)임  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5,000,000원임  7.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한 금액: 15,000,000원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①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였으며, 6년간 매년 9,000,000원씩 총 54,000,000원을 불입함  ② 2016년 1월 5일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불입액 중 1,400,000원은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③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계좌 운용수익누계액은 6,000,000원임 |

**<요구사항 1>**

연금수령한도,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연금수령한도 | |  |
| 총연금액 | 공적연금(국민연금) |  |
| 사적연금(연금계좌) |  |
|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 |  |

**<요구사항 2>**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기타소득금액 |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보험료소득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고, 보험료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3 >**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  |  |  | | --- | --- | --- | | 구분 | 나이 | 비고 | | 배우자 | 71세 | 2016년 6월 20일 사망 | | 장남 | 27세 | 장애인, 소득없음 | | 차남 | 18세 | 총급여액 450만원 | | 장녀 | 15세 | 외국유학중으로 동거하지 않음 |   2. 보험료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600,000원  ②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400,000원  ③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600,000원  ④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보험료: 4,200,000원  3. 기부금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한 시설비: 20,000,000원  ② 차남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000원  ③ 장남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원  ④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3,600,000원 |

**<요구사항 1>**

갑의 인적공제액을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위 <요구사항 1>에 의한 인적공제액은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3>**

갑의 자녀세액공제액, 보험료세액공제액 및 기부금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갑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자녀세액공제액 |  |
| 보험료세액공제액 |  |
| 기부금세액공제액 |  |

**【문제 2】(7점)**

다음은 거주자 을의 퇴직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 하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2009년 7월 20일에 ㈜배움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31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  2. 퇴직급여액은 300,000,000원이다.  3. 최근 5년간 과세기간별 총급여액   |  |  | | --- | --- | | 과세기간 | 총급여액 | | 2012년 | 90,000,000원 | | 2013년 | 97,000,000원 | | 2014년 | 115,000,000원 | | 2015년 | 108,000,000원 | | 2016년 | 101,000,000원 |   4. 거주자 을이 2011년 말에 퇴직하였다면 받았을 퇴직급여(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는 80,000,000원이다.  5.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 | --- | --- | |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6. 환산급여공제액   |  |  | | --- | --- |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퇴직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8% | |

**(물음 1)**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  |
| 퇴직소득금액 |  |

**(물음 2)** 퇴직소득금액이 15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제시하시오. 단,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문제 3】(31점)**

**(물음 1)** 다음은 중소기업인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태백의 제16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며, 제15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280,000,000원이다.  2. ㈜태백은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특수관계 없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였고, 제품의 장부가액인 5,000,000원(시가: 8,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3. ㈜태백의 전기말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미지급 기부금: 4,000,000원  (현금지급일: 2016년 3월 2일)  ② 문화단체에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2,000,000원 (어음만기일: 2016년 5월 30일)  4. ㈜태백은 2016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에 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하여 60,0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하였다.  5. ㈜태백은 지정기부금 단체(특수관계 없음)로부터 A비품을 2016년 5월 1일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A비품의 매입가액은 9,000,000원이며, 시가는 6,000,000원이다. A비품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

|  |
| --- |
| 6. ㈜태백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태백은 당기에 2,400,000원을 A비품의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세법상 정률법 상각률은 0.250, 정액법 상각률은 0.150으로 가정함).  7.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제16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제16기 차가감소득금액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도(지주회사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독도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피투자회사 | 지분율 | 취득일 | 주식수 | | 주당취득가액 | | ㈜금강(상장) | 10% | 2016.1.10. | 800주 | | 20,000원 | | ㈜설악(비상장) | 70% | 2016.1.15. | 900주 | | 30,000원 |   2. ㈜독도는 ㈜금강으로부터 무상주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5월 4일)를 교부받았다. 무상주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5,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3. ㈜독도는 ㈜설악으로부터 무상주 3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3월 2일)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 중 60%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40%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4. ㈜독도는 제16기 사업연도에 노동조합전임자 B에게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독도가 B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5. ㈜독도는 2016년 1월 1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배기량 3,000cc) 1대를 9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독도가 제16기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0,000,000원이며, 감가상각비 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없다. 해당 차량에 대하여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① 사용자: 영업부 신차장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③ 운행기록 미작성  6. ㈜독도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가 없으며, 무상주 수령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요구사항>**

제16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3)** 다음은 ㈜한국(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한국이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A공사(공사기간: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의 도급금액은 450,000,000원이며, 공사원가의 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 발생원가누적액 | 100,000,000 | 250,000,000 | | 추가공사예정원가 | 300,000,000 | 250,000,000 |   2. 공사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유류비 9,760,000원(회계처리 누락)은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공사예정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3.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50,000,000원을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가정한다.  4. 발생원가누적액에는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비출자임원인 갑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 3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충당금도 계상하지 않고 있다. 갑은 2016년 8월 5일에 퇴직(근속연수: 5년 6개월 10일)하였으며,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은 40,000,000원이다.  5. ㈜한국은 공사진행률을 원가기준법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전기의 발생원가 및 추가공사예정원가는 전액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공사원가로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임원 갑의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A공사에 대한 제16기 누적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누적공사진행률 |  |
| 공사수익 |  |

**(물음 4)** 다음은 ㈜세계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세계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  |  | | --- | --- | | 구 분 | 임대기간 | | 상 가 | 2016. 7.1. ∼ 2018. 6.30. | | 사무실A | 2016.12.1. ∼ 2017.11.30. | | 사무실B | 2016.10.1. ∼ 2018. 9.30. |   2.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1월과 12월분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세계는 실제 회수한 임대료 4,000,000원만 제16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사무실A에 대한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임대기간 종료일에 일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2월분 임대료를 12월말에 수령하였다. ㈜세계는 수령한 임대료 1,000,000원을 제16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사무실B에 대한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익월 10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세계는 10월과 11월분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를 제16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세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임대료(12월분) 1,000,000원을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5. ㈜세계는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8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해당 전기오류수정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에 해외정기예금(만기 이자지급조건, 만기일 2016년 6월 30일)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누락한 금액: 20,000,000원  ② 전기에 외상매출을 누락한 금액: 60,000,000원(당기에 외상매출금 전액 회수) |

**<요구사항>**

제16기 임대료수익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5)** 다음은 ㈜서해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제16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 | | | | (단위: 원) | | | | | 당기감소액 | 20,000,000 | 기 초 잔 액 | 841,000,000 | | 기 말 잔 액 | 840,000,000 | 당기설정액 | 19,000,000 |   2.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중에는 한도초과로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826,5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당기감소액은 전액 당기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한 것이다. 퇴직금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서해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제16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전기이월 | 당기증가 | 당기지급 | 기말잔액 | | 827,000,000 | 80,000,000 | 7,000,000 | 900,000,000 |   5. ㈜서해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기까지 827,000,000원이 손금에 산입되었다.  6. ㈜서해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2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40,000,000원이다.  7.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500,000,000원이며, 제16기 말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6,000,000원이다. |

**<요구사항>**

제16기 퇴직금지급,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문제 4】(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강(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한강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산출세액: 4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 포함)  ② 공제감면세액: 4,000,000원  ③ 중간예납세액: 15,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⑤ 가산세: 1,000,000원  2. ㈜한강의 제16기 중간예납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② 2016년 4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10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③ 차입금은 모두 제15기 중 차입한 것으로서 중간예납기간 중 변동은 없으며,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차입금 | 이자율 | 지급이자 | | 차입금A | 600,000,000원 | 6% | 18,000,000원 | | 차입금B | 400,000,000원 | 4.725% | 9,450,000원 |   ④ 중간예납기간 중 내국법인 현금배당(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20,000,000원과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8,600,000원  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000,000원  ⑦ 적격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300,000원  ⑧ 위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수시부과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없다.  3. ㈜한강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

**(물음 1)** <자료>의 1번을 이용하여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자료>의 2번과 3번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1년은 366일로 한다.

**<요구사항 1>**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세무조정 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

**<요구사항 2>**

제16기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제시하시오.

(법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22% |

**【문제 5】(17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해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자 료 >**  1. 2016년 10월 15일에 제품을 5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인도)하고, 2016년 11월 10일에 외상매출금 중 매출할인액 1,000,000원과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4,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을 회수하였다.  2. 2016년 1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상품(개당 장부가액: 800,000원, 개당 시가: 1,000,000원)을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단,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 3개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① A(특수관계인)에게 상품 1개를 700,000원에 판매  ② B(특수관계인 아님)에게 상품 1개를 600,000원에 판매  ③ 개인적인 소비를 위하여 종업원에게 상품 1개를 무상제공    3. 2016년 12월 10일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내국신용장수출업자가 아님)에게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10,000,000원에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공장건물을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매각하였으며, 아래 금액은 토지가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약정에 의한 매수자의 공장건물 이용가능일은 2016년 12월 10일이다.  ① 계약금(2016. 5.10. 회수약정): 10,000,000원  ② 중도금(2016.10.10. 회수약정): 30,000,000원  ③ 잔 금(2017. 1.10. 회수약정): 20,000,000원 |

|  |
| --- |
| 5. 2016년 10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000원은 인도일에 회수하였고, 나머지는 11월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총 19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동해는 제품 인도일에 공급가액이 20,000,000원으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였다.    6. 2016년 11월 15일에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인 갑에게 재화를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50,000,000원)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갑은 인도받은 재화 중 60%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고, 40%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7.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6년 11월 1일부터 2년간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개시일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월 임대료 1,000,000원은 매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2월분 임대료는 2017년 1월에 수령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3%로 가정한다. |

**<요구사항>**

㈜동해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1년은 366일로 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1. |  |  |  |
| … | … | … | … |
| 7. |  |  |  |
| 합 계 |  |  |  |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남해(중소기업 아님)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2015년과 2016년 제1기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2015년 제1기 | 280,000,000 | 70,000,000 | | 2015년 제2기 | 312,000,000 | 88,000,000 | | 2016.1.1. ∼ 2016.3.31. | 150,000,000 | 50,000,000 | | 2016.4.1. ∼ 2016.6.30. | 200,000,000 | 100,000,000 |     2.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2016.1.1.∼ 3.31. | 2016.4.1.∼ 6.30. | | 공통매입세액 | 10,000,000\*1 | 15,000,000\*2 |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0원 포함  \*2 2016년 4월 10일에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2016년 6월 20일에 다시 매각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원 포함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냉동창고를 2016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 제1기: 10,000,000원  ② 2015년 제2기: 30,000,000원  ③ 2016년 제1기: 40,000,000원  (예정신고기간분 25,000,000원 포함)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제2기에 트럭을 취득하였으며, 관련 공통매입세액(4,000,000원)을 예정공급가액비율(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25%임)로 안분하였다.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제1기에 트럭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며, 이후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있다. |

|  |
| --- |
| 5. 회사는 원재료인 면세축산물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면세축산물의 기초재고는 없으며, 2016년 제1기에 매입한 면세축산물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사업에 사용: 91,800,000원  ② 면세사업에 사용: 15,300,000원  ③ 기말 재고액: 45,900,000원 |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과 2번을 이용하여 2016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자료>의 1번과 3번을 이용하여 201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냉동창고 관련 공통매입세액 정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할 금액을 다음의 답안 예시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냉동창고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 70% : 면세 30%)로 안분계산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에 실제사용면적(과세 60% : 면세 40%)이 확정되었다.

(답안 예시)

|  |
| --- |
|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인 경우: (+) 1,0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인 경우: (-) 1,000,000원 |

**<요구사항 3>**

<자료>의 1번과 4번을 이용하여 2016년 제1기 확정신고시 트럭 관련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차감)할 금액을 위 <요구사항 2>의 답안 예시에 따라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4>**

<자료>의 1번과 5번을 이용하여 2016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시하시오. 제1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000,000원으로 가정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제 6】(5점)**

다음은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6년 과세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2016년 공급대가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 제조업 | 7,000,000 | 11,000,000 | | 음식점업 | 5,000,000 | 17,000,000 | | 합계 | 12,000,000 | 28,000,000 |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40 : 60임  2. 2016년 6월 26일에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16년 매입내역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세금계산서 수취분 | | 계산서 수취분 | | 제조업 매입액 | 5,000,000 |  | 2,600,000\*1 | | 음식점업 매입액 | 4,000,000 |  | 5,400,000\*1 | | 공통매입세액 | 200,000 | \*2 | - |   \*1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매입액으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예정임  \*2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20%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점업: 8/108  ② 제조업: 4/104 |

**(물음 1)** 갑의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 제조업 |  |
| 음식점업 |  |
| 공통사용재화 |  |
| 합 계 |  |

**(물음 2)** 갑의 2016년 공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공제세액 |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
| 의제매입세액공제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

**【문제 7】(8점)**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증자를 위해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신주인수권은 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되었다.  2. ㈜한국의 증자 전 개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개인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 갑 | 4,000주 | 40% | | 을 | 3,000주 | 30% | | 병 | 2,000주 | 20% | | 정 | 1,000주 | 10% | | 합계 | 10,000주 | 100% |   3. ㈜한국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이며, 1주당 인수가액은 50,000원이다.  4.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밖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

**(물음 1)** 갑이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을 |  |
| 병 |  |
| 정 |  |

**(물음 2)** 갑과 병이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주주 | 증자전  주식수 | 당초 인수 주식수 | 재배정 주식수 | 증자후  주식수 |
| 갑 | 4,000주 | - | - | 4,000주 |
| 을 | 3,000주 | 3,000주 | 4,500주 | 10,500주 |
| 병 | 2,000주 | - | - | 2,000주 |
| 정 | 1,000주 | 1,000주 | 1,500주 | 3,500주 |
| 합계 | 10,000주 | 4,000주 | 6,000주 | 20,000주 |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을 |  |
| 정 |  |

**(물음 3)** 증자 전 을의 주식은 갑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병과 정의 증자 전 주식은 각기 본인들 소유이다. 신주 10,000주는 갑이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주금도 갑이 전부 납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갑, 을, 병, 정의지분비율대로 배정된 후 등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및 증자 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문제 8】(4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거주자 A는 2016년 6월 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500,000,000원)를 ㈜대한에게 유증하였다. 토지 이외에 A의 상속재산은 없다.  2. ㈜대한은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 갑 | 40,000주 | 40% | | 을 | 30,000주 | 30% | | 병 | 30,000주 | 30% | | 합계 | 100,000주 | 100% |   3. 갑은 A의 아들이며, 을은 갑의 딸이다.  4.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

**(물음)** 거주자 A의 유증과 관련한 ㈜대한, 갑, 을, 병의 과세문제를 다음 답안 양식으로 간략히 기술하시오. 단,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과세문제 |
| ㈜대한 |  |
| 갑 |  |
| 을 |  |
| 병 |  |

**-끝-**